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B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지수(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경(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86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 3명¹⁾도 모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인데, 직진 중이던 피고인의 과실보다는 좌회전하던 상대방(원심공동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²⁾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그 중 1명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고, 나머지 피해자는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원심공동피고인)와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2) 보험사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방(원심공동피고인)의 과실을 80%, 피고인의 과실을 20%로 결정한 바 있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정도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01

판사 김성수 _____

판사 이상균 _____